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20137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22.02.21

홈페이지 없음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5.04.25

테이큰커피

정 보 공 개 서

테이큰커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테이큰커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386, 1층 103호(화양동)

[가맹본부의 전화 및 팩스번호] TEL : 070-8807-9846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부 TEL : 070-8807-9846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주)테이크커피			
사용 브랜드	주 소			
테이크커피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386, 1층 103호(화양동, 하이뷰오피스텔)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4.09.27	2024.11.01	강인애	070-8807-9846	
법인등록번호	110111-9065560	사업자등록번호	395-88-0314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대표이사	(주)테이크커피 /강인애	테이크커피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386, 1층 103호(화양동, 하이뷰오피스텔)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인애	070-8807-9846	
사용인 (감사)	상호/이름 (주)테이크커피 /강민정	테이크커피	주 소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386, 1층 103호(화양동, 하이뷰오피스텔)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인애	070-8807-9846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테이크커피	테이크커피	2024.9.26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16길 51, 제1호(화양동)	강인애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테이크커피	
상 호	테이크커피_____점	
서비스포	TAKEN 테이크	상표 등록번호 제41-0369-6320000호 (2016.08.24)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	66,311	42,773	23,538	249,001	20,768	23,538
2023	40,282	40,282	0	222,381	14,725	20,979
2024	54,668	34,025	20,643	26,319	713	643

※ 상기 재무제표는 개인 사업자 테이크커피의 재무제표입니다.

그 근거자료는 [별첨1 전년도 재무제표(손익계약서/재무상태표)]에 첨부합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강인애	대표이사	2024.9~현재	대표이사	업무총괄
관련 임원	강민정	감사	2024.9~현재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만료일
TAKEN 테이크 (서비스권)	가맹점 운영	등록 2016.08.24	등록 제41-0369-6320000호	강인애	2026.08.24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중 출원중인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한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 당 가맹본부는 서비스권 소유자 강인애님으로부터 서비스권에 대한 사용권을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 받았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20년 3월 30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5년 08월 10일)

2. 테이큰커피 가맹본부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테이큰커피	테이큰커피	강인애	2020.3.30.~2024.9.26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16길 51, 제1호(화양동)
(주)테이큰커피	테이큰커피	강인애	2024.9.27~현재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386, 1층 103호(화양동)

3. 테이큰커피 가맹본부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테이큰커피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	커피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7	2	5	11	6	5	11	11	
서울	5	1	4	8	4	4	8	8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1	1		1	1	1	

강원									
충북	1	1		2	2		2	2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최근 3년간 해당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3	2		3		2
2023	2	4				6
2024	6	5				11
합계		11		3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도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매출액 평균 계산시 영업일수 6개월 미만은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총 11개의 가맹점 중 10개의 가맹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 12개월 미만은 12개월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 매출액은 POS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8. 당사의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1	430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해당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0. 광고 및 판촉 활동><표 5-4 광고분담내역 LIST>」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연간	-	-	-	

※ 분류의 어려움으로 총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당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제를 시행하지 않고 서울보증보험(주)의 보증보험증권을 귀하에게 제공합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과 보증보험증권을 계약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공하는 보증보험증권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상품명	프랜차이즈보증보험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피보험인(보험계약자)	가맹본부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30일 소요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외부공사, 소방방염시설공사, 전기증설공사, 철거공사, 화장실공사, 덕트외부입상공사, 가스공사, 후드제작, 냉난방기기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비고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13,200 (가맹비 7,700, 교육비 5,500)]		
가맹비	가입비	30% (2,310)	체결 후 다음날까지	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합니다.
			점포개설 이전까지	
	Know-how 제공대가	30% (2,310)	계약해지시 반환합니다.	
			체결 후 다음날까지	
	개업지원대가	30% (2,310)	점포의 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각종 자료 제공	10% (770)	체결 후 다음날까지	
			점포의 개설 전	
교육비 (5,500)		체결 후 다음날까지	개업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개업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해지시 반환합니다.		

2) 계약이행 보증금의 내용은 같습니다.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당사는 계약이행보증금이 없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단위: 천원)
합 계	[13,200]
가맹비	7,700(부가세포함)
교육비	5,500(부가세포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거나 또는 가맹점 오픈일에 다음의 금액을 당 가맹본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표 5-1 물품 LIS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총계	[53,350]		5,335	※[33]㎡ 기준(10평)	
인테리어	가맹본부	22,000	2,200	계약 체결시 개별 계약	공사 전 계약취소
설비/집기	협력업체	21,450	2,145		설치 전 계약취소
의탁자 (메뉴판)	협력업체	3,300			설치 전 계약취소
외부 (간판 등)	가맹본부	4,400			설치 전 계약취소
최초 상품 비용	협력업체	2,200		점포개설 전 3일	상품 미공급시
감리비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자체시공시 : 3.3㎡ 당 [275,000]원 부담		점포개설 전 3일	공사 전 계약취소

※ 상기의 인테리어, 필요설비/정착물에는 외부공사, 소방방염시설공사, 전기증설공사, 철거공사, 화장실공사, 덕트외부입상공사, 가스공사, 후드제작,

냉난방기기 등은 포함되어있지 않고 별도비용이 부담됩니다.

- ※ 지정업체의 정보는 정보공개서의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표 4-1 지정업체 LIST>」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귀하는 귀하의 책임으로 점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귀하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점포선정의 문의처 : 당사의 점포개발팀, 표지에 표기된 전화번호 참조]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사업(영업)이 가능한자	가맹사업이 가능한자
종업원	일반음식점 근무가 가능한 자	1) 테이크커피 직영점 및 테이크커피의 타 가맹점 직원을 자신의 점포에 근무하도록 유도할 수 없음. 다만,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함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3) 만19세 이상일 것 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취득 가능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표 4-1 지정업체 LIST>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0. 광고 및 판촉 활동> <표 5-4 광고분담내역 LIST>」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110/월	익월 10일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전국광고)	가맹본부	가맹본부(50%) 전체 가맹점사업자 (50%)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 시 반환 안됨	표 5-4 광고분담내역 참고 (상품광고+가맹 점모집광고의 경 우에는 가맹점사 업자가 25% 부 담)
광고 분담금 (지역광고)	가맹본부	가맹본부(50%) 지역 가맹점사업자 (50%)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 시 반환 안됨	
판촉분담금		행사별로 분담 등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사전 통지	교육 실시 3일 이전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후 반환 안됨	교육 필요시 지급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상호협의	간판 변경 3일 이전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협력업체	상호협의	교체·보수 3일 이전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개선 3일 이전			VII.가맹본부의 경영및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협력업체	33,000원/월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로열티”는 후불형식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이 없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단위 : 천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QSC관리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점 관리 실태 감독, 효율적인 점포운영 관리를 위한 CCTV열람	수시	문의: 가맹본부
회계처리	매출상황 및 매출장부, POS상의 각종 정보	수시	문의: 가맹본부
재고관리	상품자재, 설비기기	수시	문의: 가맹본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맹계약서 제 37 조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상 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 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

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 잔여계약기간으로 계약시

잔여계약기간으로 체결시 영업양수인은 당사에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비고
오픈지원 및 기술지원비	1,100	부가세포함
교육비	5,500	부가세포함

나. 신규계약으로 계약시

신규계약으로 체결시에는 영업양수인은 당사에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도과정의 부담은 신규계약시의 부담 금액과 동일합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비고
가맹비	7,700	부가세포함
교육비	5,500	부가세포함

※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8.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표 5-3 영업양도절차 LIS T>」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 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계약서 제 7 조 [계약 종료 후의 조치]>

- ①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테이크커피』 시스템 및 조리법, 운영방법, Know-how 등 『테이크커피』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지식재산권과 간판, 휘장, 로고 등 『테이크커피』에 관한 일체의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乙의 비용으로 7일 이내에 乙의 모든 물건으로부터 위 영업표지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철거 및 원상복구 및 철거의 비용은 본 계약이 甲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甲이 부담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乙이 부담한다.
- ③ 乙이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면적당(본 계약에 명시한 가맹점면적) 1,500원씩[매장면적(m²)X지체일수X1,50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乙은 『테이크커피』 가맹점이라는 것을 공중에게 직·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甲이 제공한 모든 매뉴얼 및 양식, 보고서, 서신,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문서를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날로부터 7일 내에 甲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하지 않는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해당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표 5-1 물품 LIST>

① 부동산·용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② 설비·집기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상기의 리스트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강제하는 품목(상품, 원·부재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상기의 리스트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표 5-2 판매상품 LIST> 참조	아래와 같음	1회위반 : 서면시정요구 2회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이상위반 : 계약해지절차

[취급상품 제한내용 및 조건]

취급상품 제한
<가맹계약서 제 21 조 [경영지침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 ① 乙은 식품의 조리방법, 상품종류, 판매방법 등에 대하여 『테이크커피』의 이미지 및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한 甲의 지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乙은 甲의 사전승인 없이, 『테이크커피』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상품이나 메뉴 이외의 상품이나 메뉴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단,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乙이 甲이 정한 상품의 메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甲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 · 판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	----------	-----------	--------

다른 가맹점이나 소비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표 5-2 판매상품LIST 참조	<가맹계약서 제 20 조 [상품의 조달과 관리 및 대금의 지불] > ⑦ 乙은 甲의 동의 없이 甲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자재를 다른 가맹점이나 소비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회위반 : 서면시정요구 2회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이상위반 : 계약해지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5-2 판매상품 LIST>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가격통보방법 및 제한]

가격 제한
<가맹계약서 제 21 조 [경영지침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 ③ 乙은 甲이 공급하는 상품 및 용역의 소비자 가격에 관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甲이 제시하는 권장가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판매상품별 또는 용역별 소비자 권장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甲이 제시하는 소비자 권장가격이 물가 변동 또는 甲 또는 乙의 영업 정책 등으로 인

하여 변동할 경우, 甲은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여 이를 조정하고 시행 2주전에 이를 乙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⑤ 乙이 지정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2주전에 이를 서면에 의하여 변경 의사를 甲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없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테이큰커피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일반상권	점포소재지로부터 반경 <u>500m</u> 이내	계약서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특수상권	점포가 속해 있는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계약서에 특수상권 명 기재

※ ① 일반상권 : 특수상권이 아닌 상권

② 특수상권 :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대형쇼핑센터, 복합건물, 지하철역사내 상가, 종합병원, 공항 등 대규모 유통집객시설

- ③ 일반상권의 기준에 따라 영업지역을 설정하였으나 해당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이 있을 경우 특수상권은 영업지역에서 제외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준수-변경사유
<가맹계약서 제 4 조 [영업지역]> ② 甲은 乙의 영업지역을 존중하며, 乙의 동의없이 甲의 『테이크커피』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거나,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乙의 영업지역 내에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점이나 직영점 개설에 대해 乙과 합의를 거쳐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의 브랜드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	-	-

※ 당 가맹본부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없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4	0%	0%
------	----	----

※ 직영점과 가맹점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가맹점의 전용상품은 없는 상태입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 년입니다. 다만, 본 계약의 재계약 기간은 1 년간으로 하며,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자동연장된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사유
<가맹계약서 제 5 조 [계약기간]> ② 甲은 乙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甲은 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甲은 乙의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1. 乙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乙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甲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乙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乙이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甲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乙이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甲이 乙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乙이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가맹계약서 제 6 조 [계약의 해지]> ① 甲 또는 乙은 다음 각 호의 위반한 경우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乙이 제8조[최초 가맹금] 제9조[계속 가맹금] 등 금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2. 乙이 제10조[교육 및 훈련]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乙이 제12조[운영매뉴얼 준수 및 감독 · 시정요구권] 각 항에 의거한 甲의 시정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할 경우
4. 乙이 제17조[乙의 영업양도 등]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5. 乙이 제20조[상품의 조달과 관리 및 대금의 지불]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6. 乙이 제21조[경영지침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7. 乙에게 제23조[상품공급 및 영업지원의 중단]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8. 乙이 제28조[乙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9.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 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10. 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해지 사유

<가맹계약서 제6조 [계약의 해지]>

② 甲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5-3 영업양도절차 LIST>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담당팀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가맹본부

- ①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비용으로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 잔여계약기간으로 계약시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다만, 당사와 영업양수인의 합의에 따라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나. 신규계약으로 계약시 부담비용)으로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계약 상속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통지 → 당사 담당팀 검토 → 상속인에게 서면 통지 → 완료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 기타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한, 해당 가맹 계약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전·대차하거나 질권설정 할 수 없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의 존속 기간 및 계약 종료 후 1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한기간	경업금지 되는 업종	제한지역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후 1년	커피 등 당사 메뉴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	국내 전 지역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자율	매월 26일(2월은 24일) 이상 점포를 개장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7일전에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품질(Quality)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가맹본부
서비스(Service)	담당자 매장 방문 → 서비스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가맹본부
청결(Cleaness)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가맹본부
회계 감사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장부나 POS검사 → 감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가맹본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5-4 광고분담내역 LIST>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광고	브랜드광고	50%	50% (전체가맹점)	산출의 근거를 서면을 통하여 제시	전국광고 (TV, 라디오, 5대 일간지 등)
	상품광고			해당없음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음	해당없음	
	상품광고+가 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전체가맹점)	산출의 근거를 서면을 통하여 제시	
지역광고	가맹점 매출증진	50%	50% (지역가맹점)	산출의 근거를 서면을 통하여 제시	지역단위광고

개별광고	가맹점 매출증진	없음	100%	해당없음	단독광고
------	-------------	----	------	------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본인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 지역 내에서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하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광고물, 기타 선전매체의 제작, 배포 등에 있어서 당사의 표준지침 및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별 광고/판촉활동
<가맹계약서 제 16 조 [광고 및 판매촉진 등]> ⑥ 甲은 乙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가맹점별 개별 판촉 활동”을 지시 할 수 있으며, 비용은 乙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그 비용의 일부를 甲이 지원할 수 있다. ⑦ 乙은 판매증진을 위하여 “가맹점별 개별 판매촉진 및 광고활동”을 할 경우, 그 형식이나 소재, 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에 甲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甲이 제시한 요건 및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비용은 乙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그 비용의 일부를 甲이 지원할 수 있다. ⑧ 乙은 전항의 “가맹점별 개별 판매촉진 및 광고활동”을 위한 팜플렛, 전단, 리플렛, 카탈로그 기타 판촉물을 제작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甲의 대표전화와 팩스번호,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광고·판촉행사 동의 비율

구분	동의 비율
광고	50% 이상
판촉행사	70% 이상

- 상기 동의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주까지 포함하여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판촉행사의 경우 동의 비율이 70%미만일 경우 동의한 가맹점주만을 대상으로 행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 7 조의 2 [손해배상액의 예정]>

- ①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경우 또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甲 또는 乙은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급하되 그 위약금은 乙이 운영하는 점포의 과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단, 현재 사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점포개설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매출액을 3개월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제28조 제외)

: 일할 계산한 乙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 X 5% X 잔여기간(월)

- ③ 乙은 甲 또는 甲의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의 임원이라 함은, 정보공개서에 임원으로 기재된 자를 뜻한다.

<제 20 조 [상품의 조달과 관리 및 대금의 지불]>

- ⑧ 乙이 가맹사업의 독창성과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甲 또는 甲이 공식지정 한 업체가 공급하거나 승인하는 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에게 위약금으로 **일금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28 조 [乙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

- ④ 乙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항 또는 제2항(영업상 비밀 공개금지)을 위반하거나,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종료 이후 1년간 제3항(경업금지 의무)을 위반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위약금으로 건당 일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6 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1일이상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1일이상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1일이상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제공 후 14일	
가맹금 납부	- 본사 계좌로 입금 -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 발행	1일이상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3일이상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1일이상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20일이상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3일이상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자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 개선이 끝난 날 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	---------	-----	------	-----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 : 가맹본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업 교육	매장관리교육 / 메뉴교육 / 고객서비스교육 / 상품관리교육 등	실습교육 이론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개업이전	필수 교육
운영 교육	메뉴교육 등	실습교육 이론교육	교육실시 1개월 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교육
특별 교육	매장관리교육 / 메뉴교육 / 고객서비스교육 / 상품관리교육 등	실습교육 이론교육	교육실시 7일 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개업 교육	9일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운영 교육	사전통지	사전통지	
특별 교육	사전통지	사전통지	

※ 개업교육시 인원은 2명으로 한정합니다. 교육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본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

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당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가맹계약서 제 10 조 [교육 및 훈련]> ⑥ 乙이 제1항과 제2항의 개업교육 의무를 위반한 경우 甲은 가맹점의 개설을 유예할 수 있다. ⑦ 甲은 乙과 乙이 고용한 직원이 교육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적정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甲은 乙의 책임으로 개점을 연기 또는 보류할 수 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직영점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직영점이 없습니다.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직영점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별첨 1 >

<2022년/2023년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2년/2023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4년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4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별첨 2 >

희망지역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희망지역 :

	점포명	소재지	연락처
1	노량진점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16길34	0507-1331-4154
2	청주대중문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수암로98-15	0507-1384-8090
3	성균관대점	서울 종로구 명륜2길4	0507-1345-9790
4	충북대점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674번길72	0507-1455-8915
5	중앙대점	서울 동작구 흑석로9길 15	0507-0284-4709
6	반포점	서울 서초구 주홍길 3	0507-1364-3716
7			
8			
9			
10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표지에 기재된)당사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
(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